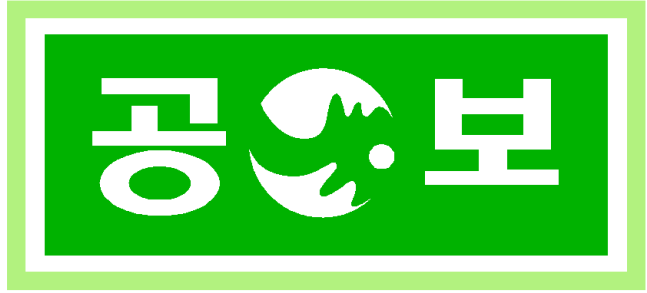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56 호 2013. 11. 21(목)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6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전부개정규정].....2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950호[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5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전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유종오



2013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전부개정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관할)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의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 (징계처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 삭제**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용 개정**
 - 행위의 누가, 행위의 경합, 징계의 경감에 대한 내용 삭제
 - 청원경찰 징계의 관할을 정함(제2조)
 - 징계의 종류(과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구분함(제3조)
 -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9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공 고 명: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2.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3. 대 상 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36번지 외 17필(붙임참조)
- 4. 공고기간: 2013. 11. 18. ~ 12. 17.(30일간)
- 5. 이의신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도시녹지과
- 6. 지정예정일: 2013. 12. 18. (이의신청 결정 통지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붙임참조
- 8. 해당 서류 열람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 9.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41-7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심의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취약영역	성명	소유자		비고
	시도	구군	동			(㎡)	(㎡)			주소		
계(9개소)				18필지		1,043,791	16,900					
제2013-1호	울산	북	진곡	산136	임야	13,268	2,500	신상태	영양전세울산동진회	울산광역시 중구 화정동 143-1(중구 영영상 1길 15, 202호)		
제2013-2호	울산	북	진곡	산136-1	임야	3,303	1,500	신상태	심민우·이윤금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12-2 동북아파트 105/601		
제2013-3호	울산	북	연암	산78-1	임야	243,240	1,000	신상태	대한불교조계종 육연암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0		
제2013-4호	울산	북	양정	산91	임야	210,744	2,000	신상태	극(신림정)	경남·양산시 동면 석산리 1477-2번지 양산국유림관리소		
제2013-5호	울산	북	매곡	산65	임야	26,182	500	토석류	최석기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문수로 2105-75		
제2013-6호	울산	북	매곡	산70-2	임야	22,818	600	토석류	김석영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23(매곡동)		
제2013-7호	울산	북	매곡	산120-1	구거	28,496	400	토석류	국(국토해양부)			
제2013-8호	울산	북	중산	산3-1	임야	275,008	1,000	토석류	울산군외 14명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1길 12-6(중산동)		
제2013-9호	울산	북	중산	산4	임야	7,438	800	토석류	윤병채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1길 12-6(중산동)		
제2013-10호	울산	북	중산	산5-1	임야	86,876	200	토석류	울산군외 14명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1길 12-6(중산동)		
제2013-11호	울산	북	신현	산189	임야	17,851	800	신상태	박선례외 2명	울산광역시 중구 권남1길 27(남외동)		
제2013-12호	울산	북	신현	1009	하천	4,612	1,500	신상태	국(국토교통부)			
제2013-13호	울산	북	신현	산22	임야	8,132	800	신상태	이상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9동 1504(우정동·신경아파트)		
제2013-14호	울산	북	연암	산86-1	구거	4,940	1,200	토석류	국(국토교통부)			
제2013-15호	울산	북	연암	1388	임야	14,526	300	토석류	울산광역시			
제2013-16호	울산	북	연암	산92	임야	23,504	800	토석류	배제익	세종특별자치시 노음로 14,106동905호(원출동·청미들이파트)		
제2013-17호	울산	북	연암	산92-1	구거	894	800	토석류	국(국토교통부)			
제2013-18호	울산	북	연암	산90-3	임야	51,959	200	토석류	배태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안대로 220번길 65,102동2801호(부산영도·부산서면동·도모신림)		
제2013-19호	울산	북	연암	산90-3	임야			토석류	배제석	울산광역시 남구 범대로 87번길 23,305호3층(영·옥사동·단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2.10.2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식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진(컬러) (3cm×4cm) (모자 빛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제철용품)]